대외비

제 정	2021. 10. 01.
개 정	2024. 07. 01.

복리후생규정



Copyright @ S&I

S&I 의 사전 승인 없이 본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복사, 전재, 배포, 사용 등을 금합니다.

<u>제 / 개정 이력</u>

	일자	사유		
1	2021. 10. 01.	규정 新設	신규 제정	
2	2022. 10. 01.	1차 개정	운영 현황 반영	
3	2024. 07. 01.	2차 개정	복리후생 개편사항 반영	

(주) 에스앤아이코퍼레이션				
제정일자 : 2021년 10월 01일	복리후생규정	주관부서	1/16	
개정일자 : 2024년 07월 01일		인사팀		
	- 목 차 -			
	제 1 장 경조축의금 지급			
	제 2 장 단체보험 가입			
	제 3 장 의료비지원금 지급			
	제 4 장 장기근속상			
	제 5 장 종합검진			
	제 6 장 카페테리아 지급			
	제 7 장 학자금(장학금) 지급			
	제 8 장 은행연계대출 지원			

제정일자: 2021년 10월 01일

개정일자: 2024년 07월 01일

복리후생규정

주관부서 인사팀

2/16

제1장 경조축의금 지급 규정

제1조 (목 적)

본 규정은 임직원 또는 그 가족의 경조사 및 재해에 대하여 경조금 지급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 (적용범위)

본 규정은 취업규칙 제2조에 따른 사원 및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계약직에 적용한다.

제3조 (지급기준)

- 1. 경조항목과 경조휴가, 지급율은 [별표 1]과 같다.
- 2. 근속 1년 미만 자는 지급율의 50%, 근속 1년 이상 자는 지급율의 100%를 지급한다. 단, 수습기간일 경우 수습급을 적용한다.
- 3. 회갑, 칠순의 경우 주민등록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한다.
- 4. 결혼의 경우 세부 항목별 동일 대상자 기준 1회에 한하여 지급한다.
- 5. 경조 발생일 기준 3개월 이내 신청 건에 한해 지급한다.

제4조 (지급항목)

- 1. 경조축의금
 - 경조축의금은 [별표 1]과 같이 지급한다.
- 2. 경조휴가
 - 경조휴가는 [별표 1]과 같이 부여하고 근무일를 기준으로 한다.
- 3. 화환(조화)
 - 경사의 경우 본인결혼, 자녀결혼, 조사의 경우 배우자상, 자녀상(성년), 본인상, 부모상, 승중상, 배우자부모상, 조부모상, 외조부모상 에 한한다.
 - 10만원 이내의 화환을 지급하며, 명의는 대표이사 명의로 한다.
- 4. 근조물품 지원
 - 배우자상, 본인상, 부모상, 승중상, 배우자부모상, 조부모상, 외조부모상에 지원한다.
- 5. 장의 차량 지원
 - 본인상, 부모상, 승중상의 경우 50만원 한도 내 장의 차량 비용을 실비 지원한다.
- 6. 풍수해
 - 풍수해의 피해가 있을 경우 CEO 승인 후 지급한다. [별표 2] 참조
 - 풍수해는 폭풍우와 홍수로 인한 피해를 말한다.

(주) 에스앤아이코퍼레이션 제정일자 : 2021년 10월 01일 복리후생규정 인사팀

제5조 (구비서류)

개정일자: 2024년 07월 01일

1. 결혼

- 청첩장 (결혼안내문)
-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
- 2. 회갑, 칠순
 -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
- 3. 조의
 - 사망진단서
 -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

제6조 (신청)

- 1. 경조축의금은 HR Portal에서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한다.
- 2. 화환(또는 조화), 근조물품은 회사가 지정하는 업체에 개별 신청한다. 출산 기념품은 인사팀 담당자에 유선 또는 e-mail로 신청한다.
- 3. 풍수해 지원금은 별도 품의로서 CEO의 승인을 받고 신청한다.

제7조 (비용처리)

복리후생비(인건비)-경조축의금으로 처리한다.

제정일자 : 2021년 10월 01일

개정일자 : 2024년 07월 01일

복리후생규정

주관부서 인사팀

4/16

[별표 1]

■ 경조축의금 지급규정

구분	세부항목		지급액 (원)	경조 휴가	화환/ 조화	근조 물품	장의 차량	근조기	구비서류
	본인		300만	5일	•				-결혼안내문
결혼	자녀		200만	2일	•				-결혼안내문
	형제자매		50만	1일					-관계증명서류
회갑 or 칠순	부모, 배약	우자부모	100만	1일					-관계증명서류
	배우자상		500만	5일	•	•		•	
		성년	500만	5일	•				
	자녀상	미성년	500만	5일					
		사산							
	본인상	본인상			•	•	•	•	-사망진단서 -관계증명서류 -장의차량 영수증
	부모상		300만	5일	•	•	•	•	
조의	승중상		300만	5일	•	•	•	•	
	배우자부모상		300만	5일	•	•		•	
	형제자매상		100만	3일					
	조부모상/외조부모상		50만	3일	•	•		•	
	백.숙부모상			3일					
	배우자 형	배우자 형제자매상		3일					
	부모, 승중 탈상			1일					
재해	풍수해		Max 500만						CEO 승인후 지급

제정일자: 2021년 10월 01일

개정일자: 2024년 07월 01일

복리후생규정

주관부서 인사팀

5/16

[별표 2]

■ 재해복구 지원금 지급규정

구 분		기준 및 기	비고			
인명피	해(사망)	경조축의금 지급규정에 의함	[별표 1] 참조			
	0171	본인	500만원			
	완파	직계존비속	300만원			
71.9	는 반파 시 시 시 시 시 시 시 시 시 시 시 시 시 시 시 시 시 시 시	본인	300만원			
가옥		인파	근뛰	직계존비속	200만원	
		본인	300만원			
		직계존비속	200만원			
전답 피해		본인 및 직계존비속	200만원			
축사/하우스		본인 및 직계존비속	200만원			

- 가옥침수: 거주하는 방이 침수되어 가재도구가 피해를 입은 경우
- 전답피해: 200평 이상으로서 유실 또는 매몰의 경우 (침수는 제외)
- 축사/하우스피해 : 붕괴로 인한 피해
- 직계존비속: 조부모, 부모, 자녀 (직원 본인의 직계존비속만 가능)
- 동일한 피해 건으로 2인 이상이 지급기준에 해당될 경우 1인에 한해 지급 (부모, 자녀, 부부, 형제자매 등 지급대상자가 2인 이상 재직시)
- 상기 기준은 최고 한도액이며, 실 지급액은 최고한도 범위 내에서 피해상태를 고려하여 결정함.
- 재해에 대한 판단기준은 관공서가 발행하는 피해사실 확인서에 따름.

제정일자: 2021년 10월 01일

개정일자: 2024년 07월 01일

복리후생규정

주관부서 인사팀

6/16

제2장 단체보험 가입규정

제1조 (목 적)

본 규정은 임직원의 사망 및 주요 질병이 발생한 경우, 직원 및 가족의 경제적 안정을 확보하기 위한 복리후생성 보장 및 회사보상 대체수단으로서 단체보험 제도 운영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 (적용범위)

본 규정은 취업규칙 제2조에 따른 사원 및 계약직에 적용한다.

단, 단기간의 계약직은 제외한다.

제3조 (보장내용)

- 1. 암, 뇌혈관, 허혈성심장질환의 진단금
- 2. 상해(재해)
 - 상해(재해)사망
 - 업무 중 상해 사망
 - 상해(재해) 후 후유장해
- 3. 질병
 - 질병 사망
 - 질병 80% 이상 후유장해
- 4. 보장내용은 보험 갱신시마다 일부 변경될 수 있다.

제4조 (단체보험 운영)

- 1. 보험사의 결정은 인사부서에서 단체보험을 운영할 수 있는 보험사로 계약한다.
- 2. 보장기간: 1년
- 3. 인사부서는 중도 입사자와 퇴사자를 매년 확인하여 보험사에 통보하며, 연간 정산한다.
- 4. 보험금 청구시 본인 또는 가족이 인사부서에 통보하고, 인사부서는 사실여부를 확인한 뒤 청구인에게 보험금 청구 절차를 안내한다. [별표 3] 참조
- 5. 보험금은 청구인이 보험사에 직접 청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
제5조 (비용처리)

복리후생비(인건비)-단체보험료로 처리한다

제정일자: 2021년 10월 01일

개정일자: 2024년 07월 01일

복리후생규정

주관부서 인사팀

7/16

[별표 3]

■ 단체보험 보장내용 및 처리절차

1. 보장내용

구분	담보내역	계	비고
상해	상해(재해)사망	1억원	- 업무 중 상해 사망인 경우 2천만원 추가
(재해)	상해(재해)후유장해	최대 3천만원	- 상해로 후유장해 시 장해율에 따라 차등지급
지버	질병(일반)사망	1억원	
질병	질병 80%이상 후유장해	1억원	
	암진단급여	3천만원	- 갑상선암, 경계성종양 30% - 상피내암, 기타피부암 10%
진단금	뇌혈관질환	3천만원	
	허혈성 심장질환	3천만원	

2. 업무처리절차



제정일자: 2021년 10월 01일

개정일자: 2024년 07월 01일

복리후생규정

주관부서 인사팀

8/16

제3장 의료비지원금 지급규정

제1조 (목 적)

본 규정은 임직원의 질병 관련 진료비(특히, 고액의 진료비)를 회사가 지원해 줌으로써 직원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활력 있고 신바람 나는 회사 생활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.

제2조 (적용범위)

본 규정은 취업규칙 제2조에 따른 사원 및 계약직(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자)에 적용한다. 배우자 및 자녀 포함하며, 자녀는 만 20세 이하까지(의료기관에 의료비 지급한 날 기준) 지원한다.

제3조 (적용기간)

재직 및 휴직 중 모두 적용

제4조 (지급기준)

1. 하도

본인	배우자 / 자녀		
30만원 초과금부터 전액지원			
1,000만원 한도	각 500만원 한도		

2. 대상 의료비

- 동일질병으로 인한 건강보험 급여항목의 본인 부담금에 한함. 단, 건강보험 비급여항목 중 식대, 진찰료, CT, MRI, 검사료, 병실료(50%)는 전액 지원
- 한의원의 경우 급여항목의 본인부담금만 지원 (비급여항목 지원 불가)
- 약국의 경우 의사처방전에 근거한 치료 목적의 약제비 (비급여 및 전액본인부담금은 지원 불가)
- 치과의 경우 건강보험 급여항목의 본인부담금만 해당됨 (비급여항목은 카페테리아포인트 차감 신청 가능)
- 난임시술 단계 중 '체외수정-신선배아' 비용에 限하여 지원
- 회사의 특별한 배려와 지원이 필요한 경우, CEO 승인을 득한 후 별도의 특별 의료비 지원 기준에 따름.

3. 의료비 청구시효

- 의료기관에 의료비 지급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한 진료비에 한함.

제정일자: 2021년 10월 01일

복리후생규정

주관부서 인사팀

9/16

개정일자: 2024년 07월 01일

제5조 (신청 및 구비서류)

- 1. 해당 사항이 발생하면 HR Portal에서 필요한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의료비를 신청하고, 상위 소속부서장의 결재를 득한다.
- 2. 구비서류
 - 진료비계산서
 - CT,MRI,초음파,기타 검사 항목 있을 경우 진단서 첨부(진료확인서 대체 가능)
 - 약국 및 약방의 경우 의사처방전
 - 난임 : 의료기관으로부터 발행된 난임진단서, 진료비 계산서, 정부지원 내역 확인서

제6조 (세부 사항)

- 1. 30만원 초과금의 해석
 - 30만원 초과금액이란 동일 질병으로 치료(수차의 치료 포함)를 받고 신청할 경우 그 합산 금액이 30만원을 초과한 경우를 말한다. (단, 청구 시효내 신청)
 - 30만원 초과금 전액지원이란 지원 대상이 되는 의료비에서 30만원을 공제하고 남은 금액을 말한다. (첫 의료비 지원 후 동일 질병의 경우 30만원 비공제) ex) 급여항목 본인부담금 85만원, 비급여항목의 CT 본인부담금 50만원으로 의료비 135만원을 부담한 경우: 105만원 지원 (135만원 – 30만원)
- 2. 진료비계산서 확인 의무
 - 급여와 비급여의 세부 항목이 나뉘어진 계산서 제출
- 3. 한의원의 경우 지원 대상
 -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아 치료를 하는데 소요된 비용(급여항목 중 본인부담금)에 한함
- 4. 임신, 출산 관련 의료비 (배우자 임신, 출산도 포함)
 - 임신, 출산 의료비, 초음파검사료 등 제반 비용 지원 (병실료는 50% 지원)
 - 임신중절(기혼 여사원)도 보험일 경우 지원
- 5. 보장성 보험과의 중복
 - 보장성 보험은 강제보험이 아닌 임의보험이므로, 이중수혜로 볼 수 없고 기준대로 지원한다.
- 6. 난임지원
 - 난임시술 단계 중 '체외수정-신선배아' 비용에 限하여 지원
 - 정부지원금 초과분 중 150만원(한도)/회
 - ex) 체외수정비용 400만원, 정부지원금 180만원, 본인부담금 220만원인 경우 150만원까지 지원
 - 총 4회까지 지원(최대 600만원/年)
 - 난임의료비는 의료비지원 한도(1,000만원/年)에 포함됨
- 7. 건강보험법의 기준을 적용하는 진료기관만 지원한다.
- 8. 동일 질병으로 신청하는 경우 청구 시효, 구비서류는 모두 동일하게 적용한다.

제7조 (비용처리)

복리후생비(인건비) - 의료비로 처리한다

제정일자: 2021년 10월 01일

복리후생규정

주관부서 인사팀

10/16

개정일자: 2024년 07월 01일

제4장 장기근속상 규정

제1조 (목 적)

본 규정은 장기근속 사원 우대제도의 일환으로 회사의 발전에 공헌해 온 사원들에 대한 보상 및 사기 진작, 회사에 대한 자긍심과 소속감을 향상시킴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 (적용범위)

본 규정은 취업규칙 제2조에 따른 사원에 적용한다.

단, 계열사 이동자는 그룹 입사일을 기준으로 근속기간을 산정한다.

제3조 (지급기준 및 포상내용)

1. 10년 근속: 감사패, 현금 30만원

2. 15년 근속: 감사패, 현금 55만원

3. 20년 근속 : 감사패, 현금 65만원, 여행상품권 200만원 상당

4. 25년 근속 : 감사패, 현금 80만원

5. 30년 근속 : 감사패, 현금 100만원, 여행상품권 300만원 상당

6. 35년 근속: 감사패, 현금 120만원

제4조 (포상시기)

장기근속상의 경우 매년 1월에 포상한다. (급여에 과세 소득으로 반영)

제5조 (해외여행 기준)

- 1. 20년, 30년 근속한 사원의 부부로서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로 한다.단, 배우자가 없는 경우는 혼자서 여행하거나 직계가족 중 1인을 동반할 수 있다.
- 2. 여행지 및 여행시기, 기간은 일정금액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결정한다.
- 3. 여행시기는 본인이 적의 조정하여 해당연도 중에 여행할 수 있도록 한다. 단,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여행에 참가하지 못하는 사원은 익년에 실시한다.
- 4. 여행기간 동안의 근태처리는 연차휴가를 활용하는 것으로 한다.

제6조 (비용처리)

복리후생비(인건비) - 포상비로 처리한다

제정일자: 2021년 10월 01일

개정일자: 2024년 07월 01일

복리후생규정

주관부서 인사팀

11/16

제5장 종합건강검진 규정

제1조 (목 적)

본 규정은 임직원의 건강검진을 질적으로 향상시켜 지원함으로써 건강에 대한 불안을 해소하여 활력 있고 건강한 회사 생활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.

제2조 (적용범위)

본 규정은 취업규칙 제2조에 따른 사원 중 만 35세 이상 재직중인 자에 적용한다. (배우자 또는 직계존속 중 1인 포함)

제3조 (대상기준)

- 1. 만 35세 이상 본인은 매년,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 중 1인은 격년제로 실시한다.
 - 첫 해당연도에 본인과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 중 1인은 동반 실시한다.
- 2. 대상자는 매년 1월 1일 재직자 기준으로 한다.

제4조 (검진운영)

- 1. 담당부서*는 매년 종합건강검진 대상자를 파악하여 국민건강보험에서 실시하는 일반건강 검진대상자 명단에서 종합검진대상자로 분류하고 이를 공단에 통보한다.
- 2. 담당부서는 종합건강검진을 실시하기 전에 검진대상병원과 검진비용을 확정해야 한다.
- 3. 종합건강검진대상자는 해당시스템에 본인과 배우자의 인적 사항을 확인 및 기재하고 검진일자와 병원을 선택해야 하며, 추후 일정 변경 시 본인이 직접 시스템상 수정하여 재 예약 후 검진을 실시한다.
- 4. 종합건강검진은 당해 연도에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, 익년도로 이월할 수 없다.
- 5. 담당부서는 개인별 검진결과표를 취합하여 보관하여야 한다.
- 6. 종합검진시 근태는 종일 휴가로 인정한다.
- * 담당부서 : 임직원의 보건관리를 담당하는 부서

제5조 (비용처리)

복리후생비(인건비)-검진비로 처리한다.

제정일자: 2021년 10월 01일

복리후생규정

주관부서 인사팀

12/16

개정일자: 2024년 07월 01일

제6장 카페테리아 지급규정

제1조 (목 적)

본 규정은 직원의 복리후생 형평성을 제고하고 개인별로 다양한 복지 Needs를 반영하여 직원 만족도를 제고하는데 목적이 있다.

제2조 (적용범위)

본 규정은 취업규칙 제2조에 따른 사원에 적용한다.

제3조 (명칭)

- 1. 카페테리아
 - 맞춤형 복지제도로서 다양한 복지항목 중에서 원하는 항목을 선택할 수 있도록 설계한 복리후생제도
- 2. 복지포인트
 - 복리후생 포인트의 명칭
- 3. 복리후생관
 - 복지포인트 사용 가능한 복지포탈 공간
- 4. 온라인 사용
 - 복지매장을 제외한 복리후생관에서 포인트 사용 (On-line 복리후생관에서 개인에게 부여된 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)
- 5. 오프라인 사용
 - 복지카드(신한카드, 구)LG패밀리카드)로 일반 신용카드 가맹점에서 사용
 - 복지카드로 카드가맹점에서 제품 구입 또는 서비스를 받는 방식
- 6. 복지항목 (또는 자율선택 항목)
 - 기업의 생산성 제고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것으로서 직원 개인이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항목

제정일자: 2021년 10월 01일

개정일자: 2024년 07월 01일

복리후생규정

주관부서 인사팀

13/16

제4조 (제도의 운영)

- 1. 운영형태: 포인트제 도입
 - 개인별 복리후생 예산을 포인트로 전환하여 지급한다.
- 2. 개인별 당해 연도의 복지포인트는 매년 1월 중 부여하며, 근속, 직급에 관계없이 개인별 1,000포인트씩 일괄 부여한다.

단, 신입사원 또는 중도입사자의 경우 차등 지급한다.

- 1~3월:1,000포인트, 4~6월:750포인트, 7~9월:500포인트, 10월~11월:250포인트, 12월:미지급
- 3. 매년 부여한 포인트는 차년까지 이월된다.
- 4. 복지포인트 계산에 있어서 1포인트는 1,000원으로 하며, 발생비용은 100원 단위에서 사사오입 한다.

제5조 (신청 및 정산)

- 1. 자율항목은 온라인/오프라인으로 사용 가능하나 온라인 복리후생관을 중심으로 이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, 오프라인에서의 이용은 온라인 복리후생관에서 제공하는 항목 중 일부 항목과 동일한 메뉴에서만 이용 가능하도록 한다. 이에 사용된 복지포인트는 매월 급여에 소득으로 반영하여 정산한다.
- 2. 정산절차
 - 1) 온라인인 경우

(직원) 복리후생관에서 포인트 사용

(인사부서) 매월 1일 ~ 말일까지 사용한 포인트 내역에 대한 정산내역서 확인 후 익월 10일까지 복리후생관리 위탁업체의 법인계좌로 정산된 포인트 사용금액을 입금

2) 오프라인인 경우

(직원) 복리후생관에 접속하여 복지카드 사용내역 확인 후 잔여포인트에서 차감 신청 (카드사) 개인의 복지카드 결제계좌에 입금 (포인트 차감 신청 후 3~4일 정도 소요) (인사부서) 전월 27일 ~당월 26일까지 사용한 포인트 내역에 대한 정산내역서 확인 후 익월 11일까지 카드사로 사용금액을 입금

3. 중도 퇴사자의 경우 분기별 포인트 사용금액 중 초과분에 대해서는 정산금액에서 공제한다.

(중도 퇴사자 사용 가능금액)

1월: 0포인트, 2~3월: 250포인트, 4~6월: 500포인트, 7~9월: 750포인트, 10월~12월: 1,000포인트

제6조 (비용처리)

복리후생비(인건비) - 복지포인트로 처리한다.

제정일자: 2021년 10월 01일

개정일자: 2024년 07월 01일

복리후생규정

주관부서 인사팀

14/16

제7장 학자금(장학금)지급규정

제1조 (목 적)

본 규정은 임직원의 자녀에게 장학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무의욕을 고취하고 애사심을 조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.

제2조 (적용범위)

본 규정은 취업규칙 제2조에 따른 사원 중 지급일 기준 입사 6개월이 지난 자에 적용한다.

제3조 (지급기준)

- 1. 학자금
 - 수혜자녀 한도 : 제한 없음
 - 자격: 지급일 기준 입사 6개월 이상인 임직원의 중.고등학교 국내(외) 취학자녀
 - 수혜한도: 입학금 1회, 등록금 총 지급
 - 지급금액 : 입학금 및 등록금, 운영지원비 전액 실비 (교복구입비, 실기수업료, 급식비 등은 제외)

(국외 소재 학교 및 국내 특수학교의 경우, 별표 4.의 기준에 따른다.)

2. 장학금

- 수혜자녀 한도: 제한없음
- 자격 : 지급일 기준 입사1년 이상인 임직원의 전문대 및 4년제 대학교 국내(외) 취학자녀
- 수혜한도 : 입학금 1회, 등록금 최대 8회 지급
- 지급금액 : 입학금 및 등록금

(국외 소재 학교 및 국내 특수학교의 경우, 별표 4.의 기준에 따른다.)

* 지급학교 기준 : 대학알리미(www.academyinfo.go.kr)에서 조회되는 학교에 한하며, 교육부 인가의 학교만 지원 가능, 학점은행제 제외

(조회되지 않는 학교는 학자금 담당자에게 별도 문의하여 지급 대상여부를 결정한다)

3. 기타

- 국외 소재 학교 및 국내 특수학교의 경우 지원 한도 금액은 연초에 당해연도 지원한도를 결정한다.
- 기준일은 그룹 입사일을 기준으로 한다.

(주) 에스앤아이코퍼레이션 제정일자 : 2021년 10월 01일 각리후생규정 개정일자 : 2024년 07월 01일 수관부서 인사팀 15/16

제4조 (구비서류)

등록금 납입영수증 (납부고지서 불가)

제5조 (지급방법)

수시. 단, 당해년도 지급을 원칙으로 하며, 4분기 비용은 익년도 1분기까지 신청 가능.

[별표 4]

■ 국외 소재 학교 및 국내 특수학교 학자금(장학금) 지급 한도 금액

구분	지급 한도 금액 (입학금 별도)
중학교	2,000,000원/분기
고등학교	2,000,000원/분기
대학교	5,000,000원/학기

* 일시납을 한 경우에도 국내 학교의 기준에 따른 분기 또는 학기로 구분하여 각각 신청한다.

제정일자: 2021년 10월 01일

개정일자: 2024년 07월 01일

복리후생규정

주관부서 인사팀

16/16

제9장 은행연계대출 지원

제1조 (목 적)

본 규정은 은행연계대출 지원을 통해 임직원의 주거 관련 경제적 부담을 덜고 장기 근속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 (적용범위)

본 규정은 취업규칙 제2조에 따른 사원 중 무주택자 및 이동 발령자에 적용한다.

제3조 (세부기준)

- 1. 신청시기: 전세/매입/발령 후 3개월 이내 (단, 매월 18일~ 급여지급일 대출 실행 불가)
 - 계약 일자 또는 신규 분양시 잔금 지급 일자 기준으로 3개월 이내
- 2. 지원금액: 전세 최대 5천만원 / 매입 최대 1억원 (신용대출)
 - * 개인 신용도에 따라 대출이 제한될 수 있음
- 3. 상환방법: 1년 거치(필수), 거치기간 포함 최장 10년 상환
- 4. 이자율: 변동금리 (이자율의 50% 회사 지원)
- 5. 중도상환: 수시, 중도상환 수수료 없음 (단, 매월 18일~26일 중도상환 금지)
- 6. 유의사항
- 휴직자의 경우, 휴직기간 동안 미공제된 대출 금액을 복직시 전액 공제한다. (복직 월 급여에서 전액 공제 불가한 경우, 그 차액은 익월 급여에서 공제)
- 퇴직시 전액 상환한다.

부칙

제1조 (특례 규정)

본 규정의 개폐는 인사담당부서장의 제청에 의하여 CEO가 결정한다.